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정 이 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 부과

○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 도입 운영 필요

2. 주 요 골 자

가. 신고대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자(동법 제41조 제1항제3호)

나.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대상 사업장

○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 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별표1)
○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함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
-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은행계좌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

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방법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발견한 자는 위반사업장을 관할하는 환경보호과에 신고
- 전화, FAX, 우편, E-mail,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신고(별지 제8호 서식)
○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별지 제9호서식)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은행계좌에 송금

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음
-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피신고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위반행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난 후(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바. 신고 시 과태료부과 예외사항

○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을 부과함

-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임**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함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군수로부터 위반사실확인을 요청 받고 10일 이내에 동 위반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3. 10. 6 ~ 10. 25 (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홈페이지 게재, 성주군공보 게재 및 군청?읍면 게시판 게재

○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5. 참 고 자 료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환경부)

※ 도 환경 67510-12097(2003. 9. 5)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제출)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

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 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운용규정)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 예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 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 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재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재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성주군수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고지서번호	③과태료처분통지일	④독촉장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도　　군　　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성주군수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년월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 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 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도 군 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 군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주군수 귀하

절 취 선

〈별지 제11호 서식〉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③ 기타사항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군 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까지 ~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까지 ~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주 군 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까지 ~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성주군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까지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원	납부기한	. . 까지 ~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성주군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주군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성주군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성주군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